교직원표창에관한시행규칙 4-2-17

규정번호	4-2-17
제정일자	2015.6.15
최근개정	
개정차수	
관리부서	교무입학팀 총무회계팀

제1조(목적) 이 시행규칙은 학교법인 명지학원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 표창규정에 의하여 교원 및 일반직원(이하 "교직원"이라 한다)의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표창의 종류·대상) ① 표창의 종류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공로상 :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2. 근속상 : 장기근속자
3. 봉사상 : 사회봉사활동 업적이 뛰어난 자
4. 일반표창 : 기타 표창을 받을 만한 자

② 근속상은 1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되, 10년 단위로 하여 계속 표창할 수 있다.

제3조(표창 대상자의 추천) ① 표창 대상자는 교원은 교무처장이, 일반직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한다.

②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수여예정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교원의 공적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.

② 일반직원의 공적심사는 일반직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며,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공적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공적심사)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근속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공적심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공적내용이 표창목적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
2. 공적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
3. 표창이 학원 및 우리대학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
4. 대상자의 신분, 표창시기 등이 공적사항에 비교하여 합당한 지의 여부
5. 유사한 내용으로 공적자간의 형평과 균형이 유지되는 지의 여부
6. 대상자의 신상, 환경 및 결함 여부

제6조(표창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가 될 수 없다.

1.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결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2.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사회의 물의가 있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직무와 관련된 경위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
7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

제7조(근속표창의 시기) ① 근속상은 개교기념행사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도 있다.

② 정년으로 퇴임하는 자가 퇴임 전에 근속표창 연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상한다.

제8조(표창과 부상) 표창은 표창장(패)와 함께 다음의 부상으로 한다.

1. 근속상
   · 10년 : 순금 5 돈
   · 20년 : 순금 10 돈
   · 30년 및 40년 : 순금 20 돈
2. 공로상, 학술상, 봉사상, 교육상 및 일반표창의 부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표창의 대리 수령)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.

제10조(표창보고) 총장 표창은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 표창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시행규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공 적 조 서 (갑)

성 명	(한글)	(한자)		
주민등록번호			성별	
주 소				
소 속			직위	
추 천 훈 격		수공기간 (근무기간)		
주요 학력 및 경력				
년 월 일	이 력	년 월 일	이 력	
과거 포상기록				
년 월 일	내 용	년 월 일	내 용	
조 사 서				
소속				
직위		성명		

위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 . . .

추천자
직 위 성 명 (인)

공 적 조 서 (을)

공 적 사 항